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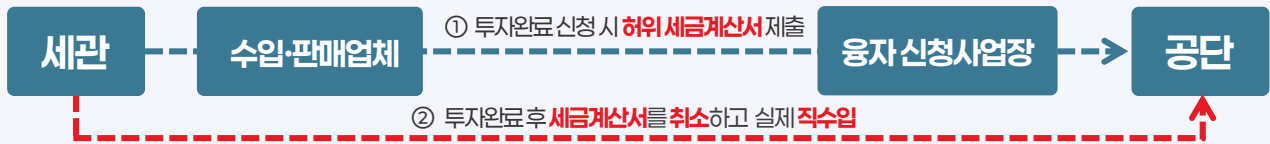
위험

부정수급 사이렌

용자금 편취를 위해 수입업체를 통한 허위서류 제출로 “부정수급”

[CASE] 부정사례

용자신청 사업장이 실제로는 설비를 직수입하면서도 수입·판매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꾸며, 가격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자금을 초과 편취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함



→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용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“범죄”

[SCHEME] 부정수법

1. 수입·판매업체와 결탁
2. 수입업체와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
3. 용자금 대여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직수입하여 용자금 초과 편취

→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1호(거짓·부정)에 해당

[RISK] 행정처분

- (일시상환) 지급된 용자금 전체 취소 및 일시상환 명령
- (참여제한) 향후 5년간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
- (형사고발) 용자금 편취를 위한 고의성 및 기망 행위 시 형법 제347조(사기)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

<부정수급 신고방법>

-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(<https://portal.kosha.or.kr/>)

고객센터



민원질의하기



부정행위신고

